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. 18 선고 2021가단2786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1. A

2. B

3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18.

주 문

1.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. 8. 2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유진현

별지